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5 - 61호

2015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 구분	채용예정 계 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필 기 시 험 과 목
			계	남	여	
계			33	30	3	
공개 경쟁 채용	지방소방사	소 방	18	15	3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제한경쟁 특별채용	지방소방장	화재 조사	전기	1	1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기계	1	1	
		헬기조정	1	1		
	지방소방사	구 조	9	9		
		화학 분야	화학 전공	3	3	

● 시험시간

- 공개 경쟁 채용 : 10:00~11:40(100분)
- 제한경쟁특별채용: 10:00~11:00(60분)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중앙소방학교 출제)로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음.

-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 : [붙임1]의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을 참고
- 소방관계법규 시험범위 기준 :
 -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 I,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
- 제한경쟁특별채용의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 점수를 적용함.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별표 7] 참조)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3차 시험 : 체력시험(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2] 참조)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다. 제4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인천광역시의료원)

-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라. 제5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가산점,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1·2단계 시험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면접시험 전 적성검사 실시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면접시험 대상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적성검사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기준일 : 최종시험일 현재)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한경쟁특별채용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나.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채용시험**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거나(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이 없음.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 경쟁 채용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4. 1. 1. ~ 1994. 12. 31.
제한경쟁특별채용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4. 1. 1. ~ 1995. 12. 31.
<p>※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 의사·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함.</p>		

라. 자격 및 경력 제한

● **공통자격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 **분야별 자격 및 경력(기준일 : 최종시험일 현재)**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화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1년이상 연구(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기분야 : 전기과, 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 기계분야 : 기계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 유사 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화학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화학분야 :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 그밖의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 유사 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구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회사 24특입대대, 헌병특경대 ※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
조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항공무선통신사 중 하나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회전익항공기 조종 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인 사람

※ 경력증명서 제출(필기시험 합격 후)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 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발급) 또는 군 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마. 신체조건

-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외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예규 72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에 의함.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 접수기간 : 3. 2(월)~3. 4(수) (09:00 ~ 21:00)	필기시험	4. 8(수)	4. 18(토)	5. 1(금)
	체력시험	5. 1(금)	5. 12(화)	5. 18(월)
△ 취소기간 : 3. 2(월)~3. 11(수)	신체검사	5. 18(월)	5. 21(목)~ 5. 22(금)	6. 2(화)
	면접시험	6. 2(화)	6. 11(목)	6. 26(금)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열람기간 및 방법) 안내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고시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공고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 고시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 에서 링크하여 접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7,000원 지방소방교이하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 4.5cm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자격증)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소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공개경쟁채용시험만 해당)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 (세부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내역 : [붙임3])

가점비율 분야	5%	3%	1%
자 격 증 (면허증)	1.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1급 ~ 4급 향해사·기관사·운항사 3.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의사, 변호사 5.소방시설관리사	1.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5급 또는 6급 향해사·기관사·운항사	1.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3급

-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함.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고시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공고함.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032-440-2533~6) 및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032-870-30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인천광역시 고시 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

[붙임 1]

[붙임 1-1]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별표 3)

□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비고

-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소방관계법규는 다음 각 목의 법령으로 한다.
 - 가.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붙임 1-2]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별표 5)

구분 \ 과목별	필수과목	선택과목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비고

- 소방사·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분야의 졸업자를 소방사·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과목은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로 한다.
-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붙임 1-3]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의 류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붙임 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7]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 참조

[붙임 3]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가점비율 분야	5%	3%	1%
① 자격증 (면허증)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기능장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자동차정비, 화공, 위험물,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통신설비,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작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전기),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거푸집,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반도체장비유지보수,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생산자동화, 농업기계, 설비보전, 농기계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조선,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차체수리,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카드,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통신기기,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전기),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1급~4급 향해사, 기관사운항사	5급 또는 6급 향해사기관사운항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의사, 변호사 소방시설관리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②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3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참조

※ 자격(면허)증(①), 사무관리(②)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①+② 합산, 단, 5%초과시 5%에 기재)

[붙임 4]

동 일 계 통 학 과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학교연락처		응시자연락처 (휴대폰)			
학교명		학과 (전공)		졸업 일자	년 월 일

위 사람이 전공한 학과는 2015년도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 채용시험 공고에 기재된 _____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		

201 . . .

총(학)장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